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19

발의연월일: 2024. 9. 5.

발 의 자:서영석·조인철·박홍배

소병훈 • 문진석 • 윤종군

김재원 · 최기상 · 윤건영

김용민 · 전진숙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」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난임치료 기간에 비하여 짧고, 온전한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의학적 시술에 더해 체질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음.

이에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」을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 하고,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면서, 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고자 함(안 제75조, 제76조, 제76조 의2 및 제77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71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"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"를 "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·난임치료휴직을 받은 경우로서"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"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·사산휴가를"을 "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·난임치료휴직을"로 하며, 같은 조에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치료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"기간 중 최초 5일"을 "기간"으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"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"를 "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0일)로"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3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·난임치료휴직 기간. 다만,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난임치료휴가 지급기간은 최초 15일로 한정한다.

제76조의2제1항 중 "유산·사산휴가기간 중"을 "유산·사산휴가기간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·난임치료휴직 기간 중"으로, "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·사산휴가"를 "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·난임치료휴직"으로 한다.

제77조제1항 후단 중 "유산·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"로"를 "유산·사산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·난임치료휴직"으로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제7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
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75조(출산전후휴가 급여 등) 고 제75조(출산전후휴가 급여 등) --용노동부장관은 「남녀고용평 등과 일 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1 제18조에 따라 피보 험자가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 산 ·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| 제18조 -----제18조의2에 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 • 난임치료휴직을-----전후휴가 급여 등(이하 "출산 전후휴가 급여등"이라 한다)을 지급하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휴가를 시작한 날[출산전후 2. -----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·사산휴가를 휴가, 유산・사산휴가 또는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 난임치료휴가 · 난임치료휴직 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

너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) 이 지난 날로 본다] 이후 1 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. 다만,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하다.

<u><신 설></u>

제76조(지급 기간 등) ① 제75조 저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「근로기준법」의 통상임금(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

- 1. (생략)
- 2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 휴가 <u>기간 중 최초 5일</u>. 다 만,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 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

 ① 게1참세 때로 나이키므ㅎ지
② 제1항에 따른 난임치료휴직
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76조(지급 기간 등) ①
<u>.</u>
 1. (현행과 같음)
· • · • · •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2
<u>기간</u>
<u></u> 우선지원 대
<u>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5</u>

우에 한정한다.

<신 설>

②·③ (생 략)

제76조의2(기간제근로자 또는 파 저 견근로자에 대한 적용) ① 고 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 1호에도 불구하고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 로자 또는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|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 간 또는 유산・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 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 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 | 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・난

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를 출산한 경우에는 20일)로

- 3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』제1 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·난임치료휴직 기간. 다만,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 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에는 난임치료휴가 지급 기간 은 최초 15일로 한정한다.
- ① · ② (청해고 가스)

②・③ (연%年 2日)
에76조의2(기간제근로자 또는 파
견근로자에 대한 적용) ①
유산·사산휴가기간,
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 양
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

산·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.

② (생략)

제77조(준용) ① 출산전후휴가 급 저여등의 반환명령, 사실 확인,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,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62조 중 "구직급여"는 "출산전후휴가 급여등"으로, 제71조 및 제73조 중 "육아휴직"은 각각 "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 또는 배우자출산휴가"로 본다.

② (생략)

<u>임치료휴직 기간 중</u>
출산
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 또는
난임치료휴가·난임치료휴직
<u>.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77조(준용) ①
유산·사산휴가, 배우자 출산휴
가 또는 난임치료휴가·난임치
료휴직"으로
② (현행과 같음)